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료 원료의 원산지 비료용기 외부에 표시 의무 부여〉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2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비료용기 등의 보증 표시 사항에 ‘비료 원료의 원산지’ 추가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6. 25.

다. 회 부 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비료 제조 시에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는 등 불량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비료용기 등의 보증 표시 사항에 ‘비료 원료의 원산지’ 추가 (안 제14조제1항)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현행법 제14조는 비료생산업자등으로 하여금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증 표시의 종류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추가하려는 내용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u>유통기한</u>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u>유통기한</u>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 ----- ----- ----- ----- <u>유통기한</u> ,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u>원산지</u> ----- ----- ----- ----- ----- <u>유통기한</u> ,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u>원산지</u> ----- -----.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한 비료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의 품질은 “원료의 원산지”보다는 “성분함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비료 원료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부산물비료의 경우 각종 부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원산지를 추적·관리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개정안의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입법조사처)

- 원산지 표시 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비료의 위해요소와 특정 원산지 간의 연관 관계가 먼저 규명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 시 원산지 표시 규제를 먼저 도입하기보다는 비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부산물 비료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를 추적·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비료협회)

- 비료 포장대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할 경우 동판제작 비용이 증가¹⁾되어 비료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 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수산시장, 횃집) 등에서 원산지별로 분리 배출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특정 및 추적·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3) 개정안 관련 제21대국회 논의 경과

-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

1) 비료 포장재에 원산지 표기를 위해서는 필름인쇄용 동판 제작 비용이 발생하고,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수입국이 국제 시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동판 재제작 비용과 기존 포장재 폐기 비용 등이 증가하여 비료 가격이 인상이 예상된다는 의견 제시

이 발의(서삼석의원안 ‘23.12.)되었으나 별도의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4) 검토의견

□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의미함(제2조).

현행법은 비료의 종류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로 분류²⁾하고 있음.

보통비료의 원료로는 주로 요소·인산이암모늄 등과 같은 화학자재가 사용되고 있고, 부산물비료의 원료로는 농축산부산물·수산부산물·음식물류폐기물·가축분뇨 등이 사용되고 있음.

2)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하여 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할 수 있다.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비교표】

구분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정의	◦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된 것	◦ 농업·임업·축산업 등 부산물, 사람분뇨, 음식물류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된 것
용도	◦ 농작물의 생산력 유지·증진을 위한 양분 공급	◦ 토양의 물리성 개선, 토양 생물활성화하여 지력 증진을 위한 유기물 공급
주요 원료	◦ 합성 및 광물질을 원료로 가공하여 질소(N), 인(P), 칼륨(K) 등을 생성하여 제조	◦ 농작물잔사, 수산부산물, 가축분뇨, 인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미생물 등을 사용하여 제조
보증 성분	◦ 질소(N), 인(P), 칼륨(K), 복합(NP·K 3요소 중 2종 이상 보증), 규산, 고토, 황, 식물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성분인 철, 붕소, 구리, 망간, 아연 등 주요성분을 보증	◦ 유기물 및 질소(N), 인(P), 칼륨(K), 토양미생물 등 주요성분을 보증
주요 종류	◦ 요소, 용성인비, 황산칼륨, 염화칼륨, 복합비료, 석회고토, 규산비료, 황산고토,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제오라이트 등(81종)	◦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유기복합, 토양미생물제제, 건계분 등(33종)
효과	◦ 식물의 양분을 직접 공급하여 단기적으로 작물 생육에 효과가 나타남	◦ 유기물질의 분해과정, 미생물 활성화 과정을 거쳐 양분을 공급하므로 장기적으로 작물 생육에 효과가 나타남
연간 공급량	◦ '23년 기준 44만톤(비료품질관리시스템 자료) * 질소질 인산질 칼리질 복합 비료의 판매량은 연 100만톤 수준(농협 비료판매시스템자료)	◦ '23년 기준 625만톤(비료품질관리시스템 자료)
생산·제공 비율	◦ '23년 기준 41.5% (비료품질관리시스템 자료)	◦ '23년 기준 58.5% (비료품질관리시스템 자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중자과(2024. 8. 14.) 제출

【 비료의 종류 】

('24.6월말 기준, 114종,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구 분		비 료 의 종 류	종류수
보 통 비 료	질소질 비료	황산암모늄(유안), 요소, 염화암모늄, 부산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암모니아수, 질산석회, 질황안, 질안석회, 피복요소, 씨디유(CDU), 아이비디유(IBDU), 엠유(MU), 칠레초석, 질산희토, 광물융합체질소	17
	인산질 비료	과린산석회(과석), 중과린산석회(중과석), 토마스인비, 용성인비, 용과린, 가공인산비료	6
	칼리질 비료	황산칼륨(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 염화칼륨, 황산칼륨고토	3
	복합 비료	제1종복합, 제2종복합, 제3종복합, 제4종복합(엽면시비용, 양액, 관주용, 화초용), 엠유(MU)복합, 피복복합, 씨디유(CDU)복합, 피복요소복합, 아이비디유(IBDU)복합, 포름요소복합	12
	석회질 비료	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패화석, 생석회, 액상석회, 수용성분상석회, 부산석고	10
	규산질 비료	규산질, 규회석(규회석비료1호, 규회석비료2호), 광재규산질, 경량콘크리트규산질, 규인, 규인칼륨, 수용성발포규산	7
	고토 비료	황산고토, 가공황산고토, 고토붕소, 수산화고토, 질산고토, 부산고토	6
	황 비료	황-질소 <22.9월 신설>	1
	미량요소비료	붕산, 붕사, 황산아연, 미량요소복합, 황산구리, 황산망간, 몰리브덴산나트륨, 킬레이트철, 킬레이트아연	9
	그 밖의 비료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석회처리, 재, 아미노산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아미노산발효부산박, 상토1호, 상토2호, 숯	10
부 산 물 비 료	부숙유기질 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부숙겨, 분뇨잔사,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분뇨발효액, 부숙왕겨, 부숙톱밥	9
	유기질 비료	어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식물성유박, 미강유박, 혼합유박, 가공계분, 혼합유기질, 증제피혁분, 맥주오니, 유기복합, 혈분	18
	미생물 비료	토양미생물제제	1
	그 밖의 비료	건계분, 지렁이분, 동애등애분, 농림부산물바이오차, 가축분바이오차	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2024. 8. 14.) 제출

□ 현행법 제14조³⁾에서는 비료생산업자등⁴⁾으로 하여금 비료의 원료명 및 투입비율, 보증성분량 등을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4) 「비료관리법」

제13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5) 비료생산업자의 보증표시(「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보통비료, [] 부산물비료)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6. 생산연월일: 7. 유통기간: 8.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9.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비료생산업자 주 소: 전화번호: 성명 또는 명칭:

(서명 또는 인)

【 현행 비료 보증표시 참고자료 】

① 보통비료

대동농업가축분퇴비

특징

1. 토양이 황색의 성질을 나타내며 보충을 필요로 하는 토양에 사용한다.
2. 토양산도를 교정하여 작물의 생육을 촉진한다.
3. 토양산도를 교정하여 작물의 생육을 촉진한다.
4. 양질의 비료를 사용하여 작물의 생육을 촉진한다.
5.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사양

1.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Guano-based Fertilizer)

성분	단위	비율	비율
질소	g/kg	1000	1000
인산	g/kg	1000	1000
칼리	g/kg	1000	1000
유기물	g/kg	1000	1000
중금속	g/kg	1000	1000

사용상, 보관상의 주의사항

1. 보관 시 직사광선 및 습기를 피하십시오.
2. 토양산도를 교정하여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십시오.
3. 저온에서 저온으로 보관하십시오.
4. 고온 또는 저온에서 보관 시 시가발생에 주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생산업자 보증표

1. 등록번호: 부산광역시 남016-나-20213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Guano-based Fertilizer)
3. 실용량: 20kg
4. 보증성분량: 질소2%, 인산3%, 칼리2%, 유기물42.54%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계분 100%
6. 수입연월일: 별도표시
7. 유효기간: 생산연월일부터 5년까지
8.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 일본 / 오리엔탈팜
9. 사용상, 보관상의 주의사항: '위 내용 참조'

1.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Guano-based Fertilizer)

비료수입업자보증표

1. 신고번호: 제 부산 남016-나-20213 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3. 실용량 또는 실용량: 20KG

4. 보증성분량: 질소2% 인산3%, 칼리2%, 유기물42.54%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계분 100%

6. 수입연월일: 별도표시

7. 유효기간: 생산연월일부터 5년까지

8.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 일본 / 오리엔탈팜

9.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 후 비료는 고집, 흡습이 되지 않도록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포장에 표시된 대로 사용하십시오.

-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Guano-based Fertilizer)

수입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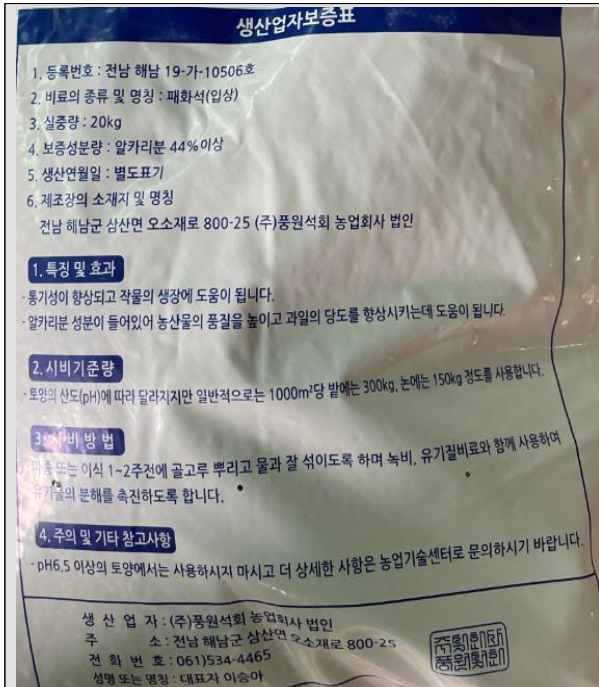
주식회사 남구 진포대로 110번길 5, 2409호
TEL: 051-462-0086
FAX: 051-462-0086
E-MAIL: ngy@n-gy.com
MADE IN JAPAN

1. 비료의 종류 및 명칭: 가축분퇴비 (Guano-based Fertilizer)

비료생산업자 보증표(가축분퇴비)

비료수입업자 보증표(계분)

② 부산물비료

 생산업자보증표 1. 등록번호: 전남 해남 19-가-10506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폐하석(임상) 3. 실용량: 20kg 4. 보증성분량: 알칼리분 44% 이상 5. 생산연월일: 별도표기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전남 해남군 삼산면 오소재로 800-25 (주)동원석회 농업회사 법인 1. 특징 및 효과 통기성이 향상되고 작물의 생장에 도움이 됩니다. 알칼리성 성분이 들어있어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과일의 당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시비기준량 토양의 산도(pH)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1000㎡ 당 밭에는 300kg, 논에는 150kg 정도를 사용합니다. 3. 사용방법 비료 또는 이식 1-2주전에 골고루 뿌리고 물과 잘 섞이도록 하며 녹비, 유기질비료와 함께 사용하여 유기질의 분해를 촉진하도록 합니다. 4. 주의 및 기타 참고사항 pH6.5 이상의 토양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더 상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업자: (주)동원석회 농업회사 법인 주소: 전남 해남군 삼산면 오소재로 800-25 전화 번호: 061)534-4465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이승아	 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량을 지켜주시고 염에 민감한 작물은 시비량을 줄여 사용하십시오. · 시비 후 양분공급 기간이 6개월 이내이므로, 재배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작물은 별도의 추가 시비가 필요합니다. 비료수입업자보증표 1. 신고번호: 제 총복 보은 002-나-10408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피복복합비료 3. 실용량 또는 실용량: 1kg 4. 보증성분량: 질소질소 16%, 구공성인산 8%, 구공성칼리 12%, 구공성고토 2%, 구공성붕소 0.08% 5. 수입연월일: 별도표기 6. 원산지 및 생산자: 독일 CONFO 7. 수입업자: 총복 보은군 보은읍 금곡4길 19 (주)이아로 2021.04.20 이아로 TEL: 080-550-3800
비료생산업자 보증표(석회질 비료)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복합비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2024. 8. 14.) 제출

그런데, 최근 일부 비료생산업자들이 공정규격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거나 보증표시에 기재된 보증성분량에 미달되는 불량비료를 생산·판매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비료의 원료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음.

【 연도별 부정, 불량비료 적발건수 】

(단위 : 건)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부정	무등록비료제조(수입)판매	15	3	-	-	1	-	2	2	-	-	2
	공정규격 미설정 비료제조(수입)판매	-	6	-	2	6	-	-	-	-	-	-
불량	중량 미달비료 생산·판매	10	3	2	-	-	-	1	-	-	-	-
	유통기간 경과 비료 판매	5	2	-	1	1	2	-	-	-	-	-
	공정규격 원료 외의 물질 사용	1	-	1	4	1	-	1	2	-	48	-
	등록제조 원료 외의 물질 사용	-	1	1	-	2	-	-	2	-	2	1
	보증성분 미달										59	170
	유해성분 초과										10	16
	기타(염분, 수분 등)										9	10
기타 법규 위반	비료 포장대 표기 사항 위반	32	29	13	34	30	22	19	20	3	-	3
	오인하기 쉬운 문구표시	3	5	4	-	18	4	3	2	-		3
	변경·보고·명령사항 미준수	4	15	21	9	5	13	4	6	1		1
계		70	64	42	50	64	41	30	34	4	128	20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2024. 8. 14.) 제출

*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던 비료 품질관리 업무가 2021년 8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업무 이관 이후 비료품질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2022년부터 불량비료 적발 건수가 대폭 늘어났음.

【 비료 보증표시 관련 규정 및 처분 사례 】

○ 보증표시 위반 관련 처분 규정

- 보증표시 거짓기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7조(벌칙))
- 보증표시 미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벌칙))

○ 보증표시 등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같은법 시행규칙(별표2))

- 보증표시 거짓기재: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
- 공정규격상 최소함유량 기준 미달, 보증성분량과 실제함유량 미달(0~10% 미만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4개월

처분대상		처분내역			
업체명	비료종류	연도	위반내용	처분 근거	처분내용
아○○	미량요소 복합	'23. 1.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 함유량이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	비료관리법 제19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4호	경고
마○팜	미량요소 복합	'23. 2.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 함유량이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	비료관리법 제19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4호	해당 명칭 비료 영업정지 6개월 및 해당제품 회수
○○○○ 조합법인	가축분 퇴비	'23. 2	보증성분량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하거나 공급	비료관리법 제19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7호	해당명칭 비료 영업 정지 6개월 및 해당제품 회수
○○ 유박퇴비	가축분 퇴비	'23. 4	보증성분량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하거나 공급	비료관리법 제19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7호	경고
(주)○○ 이앤○	퇴비	'23. 5.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 함유량이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	비료관리법 제19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4호	해당 명칭 비료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회수
삼○바이오 ○○법인	가축분 퇴비	'23. 8.	보증성분량과 실제 함유량의 차이가 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하거나 공급	비료관리법 제19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7호	경고
(주)○○○인 그리○○○	제4종복합 비료	'23. 9.	공정규격에 정해진 주성분 최소 함유량이 못 미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진열·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	비료관리법 제19조제3호 제20조제1항 제4호	해당 명칭 비료 영업정지 6개월 및 해당제품 회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2024. 8. 14.) 제출

□ 최근 수입산 농·수산물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면서
수산물 등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원산지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비료의 보증표시⁶⁾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
산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비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시키려는 것임.

또한, 비료 구매 시 원료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비료를 구매하는 농업인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가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비료용기 등의 보증 표시 사항에 ‘비료 원료의 원
산지’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른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비료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고,⁷⁾

6) 【참고자료 1】 p 12 참조

7) 「비료관리법」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
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
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관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2
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
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일부 발취) 】

비료의 종류	중금속	함유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량 또는 최대 비율	비료의 종류	중금속	함유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량
수용성 발포규산	비소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가축분퇴비, 퇴비	비소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45mg
	카드뮴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카드뮴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5mg
	수은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수은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2mg
	납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납	1kg당 납의 함유량이 130mg
	크롬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크롬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200mg
	구리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구리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360mg
	니켈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니켈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45mg
	아연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아연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900mg
황산구리	비소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여박, 골분, 잠용유박, 대두유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비소	1kg당 비소의 함유량이 20mg
	카드뮴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카드뮴	1kg당 카드뮴의 함유량이 2mg
	수은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수은	1kg당 수은의 함유량이 1mg
	납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납	1kg당 납의 함유량이 50mg
	크롬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크롬	1kg당 크롬의 함유량이 90mg
	니켈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구리	1kg당 구리의 함유량이 120mg
				니켈	1kg당 니켈의 함유량이 20mg
	아연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아연	1kg당 아연의 함유량이 400mg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2024. 8. 14.) 제출

부산물 비료의 원료가 되는 수입산 수산물 등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서류검사, 정밀검사, 현장검사 등을 거쳐 중금속, 방사능 등 일정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⁸⁾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8)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산지 표시 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비료의 위해요소와 특정 원산지 간의 연관 관계가 먼저 규명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정책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규제 필요 시 원산지 표시 규제를 먼저 도입하기보다는 비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3.다.1)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 2의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3. 폐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식품원료기준) 5) 오염물질 (10) 방사능 기준 (10) 방사능 기준

핵 종	대 상 식 품	기준(Bq/kg, L)
^{131}I	모든식품	100 이하
$^{134}\text{Cs} + ^{137}\text{Cs}$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원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 이하
	기타 식품★	100 이하

있다는 의견임.

□ 한편, 수산물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부산물 비료의 경우 수산시장 등에서 가공·판매되는 생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내장·껍질·어분 등이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부산물들을 원산지별로 분류하여 배출·수거·공급해야 하는바,

부산물비료의 경우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 과정의 특성상 원료의 원산지를 추적·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농가의 비료 구매 시 고려사항을 볼 때, 농가의 관심사항이 원료의 원산지보다는 비료의 품질·가격 등에 집중되어 있는 점⁹⁾과 원산지 표시 의무 부여 시 관

9) ① 농가의 무기질비료 구매 시 고려사항

(단위 : %)

경작 토양과의 적합성	품질	가격	회사·상표	기타
52	26.7	16.0	4.1	1.2

* 출처 : 박기환, 「무기질비료산업의 동향과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12., p.81을 재구성

② 농가의 부산물비료 구매 시 고려사항

(단위 : %)

구분	가격	효과	품질안정성	원료 종류	브랜드	주변추천	원활한 공급
1순위	19.3	33.7	19.9	17.2	0.9	3.4	5.5
2순위	24.4	26.3	19.0	13.0	0.6	4.8	11.7

* 출처 : 성재훈 외, 「친환경농자재 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10., p.58을 재구성

③ 농가의 유기농업자재 구매 시 고려사항

(단위 : %)

효과	품질안정성	가격	원료 종류	주변추천	브랜드
41.8	30.9	10.9	7.3	7.3	1.8

주: 원문은 1순위 고려사항과 1·2순위 합산 고려사항을 함께 제시하였으나, 1·2순위의 합산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1순위 고려사항만 재가공하여 인용

* 출처 : 안인 외, 「유기농업자재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마케팅협동조합,

런 업체의 부담이 가중¹⁰⁾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2012.12., p.59을 재구성

- 10) 비료 포장재에 원산지 표기를 위해서는 필름인쇄용 동판 제작 비용이 발생하고,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수입국이 국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동판 재제작 비용과 기존 포장재 폐기 비용 등이 증가하여 비료 가격이 인상이 예상된다는 의견 제시
- 11) 이와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 의견도 동일함.

참고 1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비료공정규격 설정 [별표5] 고시)

1. 보통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질소질비료	광물융합체질소	요소,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팽윤성 운모
인산질비료	가공인산비료	인산, 수산화칼슘, 구연산, 수산화나트륨
복합비료	제2종 복합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 제1종복합비료, 디앰피피
	제3종 복합	제2종복합비료, 유기물
석회질비료	석회석	석회석
	석회고토	백운석
	부산소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생석회 또는 부생(副生)분말생석회를 혼합하는 것 포함)산화석회분 및 산화고토분을 함유하는 것
	부산석회	화학제품 생산시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산화석회분 및 산화고토분을 함유하는 것
	패화석	패화석(패각포함)
	부산석고	인산을 생산할 때에 부산되는 것에 한하되 pH 조절을 위한 중화제는 사용가능
규산질비료	규산질	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용광로) 광재(슬래그)<2018.3.30.>
	규회석	규회석(천연산)에 한하며, 일체의 이물질질을 혼입할 수 없음
	수용성발포규산	규산나트륨($\text{Na}_2\text{O} \cdot \text{SiO}_2$), 중탄산나트륨(NaHCO_3), 구연산($\text{C}_6\text{H}_8\text{O}_7$)
고토비료	수산화고토	수산화마그네슘
	부산고토	부산내화물(마그네시아-돌로마이트계)
황 비료	황-질소	황(천연 또는 탈황공정에서 발생하는 황), 요소, 분산제(황과 요소의 에멀전화에 사용되는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에 한함)
미량요소비료	황산구리	염화구리(CuCl_2), 탄산나트륨(Na_2CO_3), 황산(H_2SO_4), 물(H_2O)
	황산망간	산화망간(MnO_2), 황화철(FeS_2), 황산(H_2SO_4)
	몰리브덴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NaOH), 산화몰리브덴(MoO_3)
	킬레이트철	염화철(FeCl_3), 물(H_2O), EDTA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4Na tetrahydrate
	킬레이트아연	EDTA-2Na, 질산아연6수화물($\text{Zn}(\text{NO}_3)_2 \cdot 6\text{H}_2\text{O}$), 물(H_2O)
그 밖의 비료	석회처리	2호의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2호의 광물질은 CaO 함량이 80%이상인 생석회만 25%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재	초·목회<2000. 4. 10.>
	아미노산발효부산액	조미료 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 부산물(액)을 중화처리한 것
	부산동물질액	식품첨가물인 엘-시스틴 생성시 발생하는 아미노산액
	아미노산발효 부산박	조미료생산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부산물. 다만, 물리적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첨가제는 사용가능
	상토1호 및 상토2호	제오라이트, 토탄, 흑운모, 규조토, 마사토, 석회석, 황토, 피트모스, 질석, 펄라이트, 구아노, 랑베나이트, 장석, 도로마이트, 부엽토, 부식산, 황철석, 코코피트, 팽연왕겨, 왕겨숯, 석탄회, 쌀겨, 펄프(고지), 퇴비, 맥반석(화강섬록반암), 조약돌(cobble), 농작물잔사, 지렁이분, 목초액, 키토산, 유카추출액, 고삼추출액, 나무숯 및 나뭇재, 목문석(운기석), 골분, 유황분말, 일라이트, 견운모, 화산석, 당밀, 습윤제, pH조절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 시험작물의 잘록병에 등록된 농약, 「비료관리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신고)된 비료, 톱밥
	숯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또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로 만든 펠릿

2.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구분 및 종류
부숙유기질 비료	가축분퇴비 및 퇴비	농림축산부산물류(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폐사료, 한약재찌꺼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농림부산물류 또는 상기의 물질을 이용한 버섯 폐배지, 이탄, 토탄, 갈탄, 사업장잔디예초물(골프장 등), 가축의 알 또는 그 껍질)
		수산물(어분, 어묵찌꺼기, 해초찌꺼기, 게껍질, 해산물 도매 및 소매장 부산물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수산물)
		인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인분뇨 처리잔사, 구비, 우분뇨, 돈분뇨, 계분, 동애 등에 및 지렁이 등 그 밖의 동물의 분뇨)
		음식물류폐기물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도축, 고기가공 및 저장, 낙농업, 과일 및 야채, 통조림 및 저장가공, 동식물 유지류, 빵제품 및 국수, 설탕 및 과자, 배합사료, 조미료, 두부, 주정, 소주, 인삼주, 증류주, 약주 및 탁주, 청주, 포도주, 맥주, 청량음료, 다류.)
		미생물(토양미생물제제)
		광물질(소석회, 석회석, 석회고토, 부산소석회, 부산석회, 폐화석, 생석회, 부산석고, 제오라이트)
		퇴비
	부숙겨	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분뇨잔사	인분뇨
	부엽토	부엽토
	건조축산폐기물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개정 2013. 10. 1.>
	가축분뇨발효액	가축분뇨,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중 농림부산물류, 음식물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1~0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분류번호 51-38-03) <개정 2013. 2. 14., 2019.3.28>
유기질비 료	부숙왕겨	왕겨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부숙톱밥	톱밥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 다만, 퇴비 원료 중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13. 2. 14.>
	어박	어박 또는 어분
	골분	골분
	참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그 밖의 식물성유박	각 비료의 종류별로 해당 유박에 한함. 다만, 그 밖의 식물성 유박은 별표3. 그 밖의 식물성 유박에서 정한 질소, 인산, 칼리 등 각각의 성분함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식물성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유박	참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팥유박, 야자유박, 그 밖의 식물성유박
	가공계분	계분(악취를 방지하거나 탈수 및 입상화를 위한 재료를 사용한 것 포함)
	혼합유기질	어박, 어분, 골분, 참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가공계분, 증체피혁분, 맥주오니, 미강, 옥수수유박, 팥유박, 야자유박, 혈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폐

구분	비료의 종류	원료의 구분 및 종류
		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 동애등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똥·발톱을 건조·분쇄한 것)
	증제피혁분	피혁
	맥주오니	맥주 제조 부산물
	유기복합	골분, 랑베나이트, 구아노포스페이트, 질소질구아노,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박, 미강, 옥수수유박, 팜유박, 야자유박, 혈분, 가공계분, 그 밖의 식물성유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선별·건조(100℃ 이상 에서 60분 이상)·분쇄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다만, 혐기성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제외, 동애등에분, 축각분(소, 돼지의 똥·발톱을 건조·분쇄한 것)
	혈분	가축의 혈액
그밖의 비료	건계분	계분
	지렁이분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줄지렁이분 또는 붉은줄지렁이분
	동애등에분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먹이로 하여 생산한 동애등에 분
	농림부산물바이오차	농작물 잔사(작물에서 수확하고 남은 잔재물로 볏짚 등), 왕겨, 과수 전정지, 목재(톱밥, 우드칩, 우드펠릿 등)
	가축분바이오차	가축분뇨, 농림부산물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

문 의 처
02)6788-5426